

# 自動化社會와 프라이버시保護

成 樂 寅\*

## 차 례

- I. 序 論
- II. 憲法的 價値를 갖는 基本權으로서의 프라이버시權
  - 1. 의 의
  - 2.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
  - 3. 소극적 권리에서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생활보호법제의 정립
  - 4. 통신비밀보호
- III. 公共部門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保護
  -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특징과 문제점
- IV. 私的部門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保護
  - 1. 의 의
  - 2.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상 신용정보의 보호
  -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정보의 보호
- V. 프라이버시保護를 위한 指導監督·權利救濟 總括機構의 必要性
  - 1. 의 의
  - 2. 비교법적 검토
  - 3.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총괄기구의 필요성
- VI. 프라이버시保護·알 權利·言論의 自由의 相互關聯性
  - 1. 의 의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언론보도의 제한
  - 3.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 4.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의 자유의 조화
- VII. 結 語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法學博士

## I. 序 論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주권원리에 기초한 대표민주주의는 2·3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국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그간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보완하는 의미의 半대표론의 제기는 주권자가 국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의 변동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작용의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정보화사회·자동화사회로 특징짓는 情報민주주의 내지 전자민주주의시대로의 발전과 더불어 參與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마련하게 된다.

2. 정보화사회의 초기단계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관리가 대량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근대헌법의 정립과정에서 단지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되었던 자유와 권리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정보의 전산화작업의 확대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대량적·집단적인 수집·처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그것은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3. 알 권리의 구현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되는 두 개의 헌법상 권리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출현한 대표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이들 권리의 성문화여부에 관계없이 憲法的 價値를 갖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이론과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이들 권리의 구체화를 기하는 법제의 정비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보과학기술의 엄청난 진보에 비추어 이를 제대로 따라잡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에 관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법제의 정비는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4.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학설·판례를 통하여 인식되고 있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基本權으로서의 가치를 1987년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이념의 구체화법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본 다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의 법체계상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자동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기본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Ⅱ. 憲法的 價値를 갖는 基本權으로서의 프라이버시權

### 1. 의 의

사생활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미국의 워렌·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sup>1)</sup>이 나온 이래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게 되었다.<sup>2)</sup>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왔으나 1970년 7월 17일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조항을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프라이버시침해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끊임 없이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고 또한 정보화로 인한 폐해는

1)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890, p.193; 서주실,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호, 미국헌법연구소, 1995, 45~84면.

2) W. Freedma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Computer Age*, Quorum, 1987; J. Rubinfeld, “The Right of Privacy”, 102 *Harvard Law Review*, n° 4, pp.737~807.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기도 하다.

## 2.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

사생활의 보호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의 위상과 좌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sup>3)</sup> 생각건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집단적 성격의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인적 기본권이라는 점, 또한 개인적 기본권 중에서 다시 재산권과 같은 경제적 성격의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순전히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기본권이라는 점 등에서 여타의 기본권과 일응 구별될 수 있다.<sup>4)</sup> 또한 사생활보호는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보호는 사람의 육체적 안전이 아니라 주로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sup>5)</sup>

넓은 의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기본권으로는 고전적인 주거의 보호, 직업상 비밀, 통신의 비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up>6)</sup>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내 헌법학 이론서에서는 사생활자유권<sup>7)</sup>, 사생활영역의 보호<sup>8)</sup>,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sup>9)</sup>에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을 논술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를 이 부류로 들고 있다.<sup>10)</sup> 이 중 주거의 자유는 가장 고전적인 사

3) 권영성,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3 여름호, 6~14면.

4) Jean Rivero, *Les Libertés publiques*, tome 2-Les régimes des principales libertés, Paris, PUF, 1989, pp.15 et suiv.

5) Jacques Robert, *Libertés publiques*, Paris, Montchrestien, 1982, pp.197~199.

6) Jean Rivero, *op. cit.*, p.75 et suiv.; Jean Morange,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publiques*, Paris, PUF, 1995, pp.165 et suiv.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398~399면.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357면 이하.

9)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1, 448면 이하.

10) 권영성교수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그 체계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기본조항 내지 목적

생활보호의 영역이라면 이어서 통신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가장 최근에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각건대 고전적인 주거의 자유와는 달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사생활보호권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칭하고 있다. 즉 정보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존의 기본권이 갖는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sup>11)</sup> 바로 여기에 19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을 신설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소극적 권리에서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생활보호법제의 정립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영문의 표기인 프라이버시(privacy, la vie privée)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프라이버시(권)는 바로 한국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프라이버시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화되어 있다.<sup>12)</sup> 그것은 프라이버시권이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 할 권리”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 따라서 이제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

---

조항으로 하고,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 등을 그 실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권영성, 앞의 책, 188~189면.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견해는 J. Robert, *op. cit.*, pp. 197~199. 참조.

11) 이인호, 『정보환경의 변화와 법의 패러다임』, 중앙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12) 변재욱,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도와 명예훼손』, 한국언론연구원, 1994, 207면.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인격권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권영성, 상계서, 401면.

13) 이에 대해 김철수교수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기에 관한 정보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積極的인 側面이 강조되게 된다.<sup>14)</sup>

헌법이념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동향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률제정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의 준칙제공 등으로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의 제정에 이어 「공정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1988)<sup>15)</sup>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스웨덴의 「데이터법」(1971),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1977),<sup>16)</sup>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1978),<sup>17)</sup> 영국의 「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다고 본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 440면.

14) 서울고법 1995.8.24. 94구39262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15) 변재욱, “미국에서의 사생활보호법제”,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1989, 73면 이하; 변재욱, “입법소개 : 1988년의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미국헌법연구』, 제1호, 미국헌법연구소, 1990, 33~58면 참조.

16) 법률의 정식명칭은 Gesetz zum Schutz vor Mißbrauch personbezogener Daten bei der Datenverarbeitung (BDSG); 독일에서는 1982년에 인구·직업·주거·직장에 관한 조사를 위한 법 즉 국제조사법(Volkzahlungsgesetz)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조사자료 양도규정 및 신고등록규정이 정보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에 반한다는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되면서 법률도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1983.12.5.판결; BVerfGE 65, 1(43); 이 판결에 대한 국내문헌으로는 김남진,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1989, 175~177면; 김선욱, “서독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정보화사회의 공법적 대응』(한국공법학회), 1989, 105~109면 참조. 독일의 연방 및 각 주의 법률에 관해서는 Beck’sche Textausgaben, Bundesdatenschutzgesetz mit Verordnungen, Landesdatenschutzgesetzen, Kirchengesetzen über den Datenschutz und weiteren Vorschriften, 2. Aufl., Verlag C.H.Beck.

17) Commission nationale d’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ix ans d’in-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 및 수기화일을 포함한 개인기록액세스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일본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88)이 제정되어 있다.<sup>18)</sup> 국가에 따라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보호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예 : 영국, 독일, 일본 등).<sup>19)</sup>

정보의 집단적·대량적 흐름은 동시에 국제간의 정보유통(TDF, Transborder Data Flow)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사회에서는 각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①수집제한의 원칙, ②데이터내용의 원칙, ③목적명확화의 원칙, ④이용제한의 원칙, ⑤안전보호의 원칙, ⑥공개의 원칙, ⑦개인참가의 원칙, ⑧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컴퓨터처리된 개인파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상 기본적인 흐름은 현대 정보화사회의 법제 흐름에 비추어 주로 정보처리된 파일을 중심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비자동화파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규율대상은 대체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sup>20)</sup>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

*formatique et libertés*, Paris, Economica, 1988.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제5편 제2장 제2절 사생활보호, 법문사, 1995, 846~887면 참조.

18) 기타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1982), 덴마크의 ‘공적 기관 데이터 화일법·민간 기관 데이터 화일법’(1978), 오스트리아의 ‘데이터 보호법’(1978), 노르웨이의 ‘개인데이터 화일법’(1978), 뉴질랜드의 ‘윙가웨이·컴퓨터센타법’(1976), 룩셈부르크의 ‘전자계산기 처리 개인 데이터 이용규제법’(1979), 아이슬랜드의 ‘개인데이터 처리법’(1981), 핀란드의 ‘데이터 보호법’(1987) 등이 있다.

19)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關聯文獻 : 법제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자료 제150집, 1989; 日本 總務廳行政管理局, 『世界の個人情報保護法』, 1989; 夏原 猛, 『Privacy權の總合的研究』, 法律文化社, 1991 (본서말미에 제공된 세계각국의 관련문헌 소개 참조); 부록 도표 참조(박영도,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1992, 59~60면).

20) 입법례에 관한 기본적인 흐름도는 본 논문의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표 참조.

#### 4. 통신비밀보호

넓은 의미에서의 사생활보호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밖에 없는 통신의 비밀에 관하여서는 헌법 제 18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별개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통신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전통적인 통신비밀의 보호에 나아가서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비밀의 보호가 문제된다. 특히 쌍방향통신의 가능성과 화상을 통한 통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통신이 감(도)청과 같은 비밀영역의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제적인 정비는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히 그간 한국에서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주로 공적부문에 서의 통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지난 1992년 대통령선거당시의 소위 “초원복집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사적부문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문제도 동시에 심각한 현안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sup>21)</sup>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긴급처분(제8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령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이에 따라 그간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임시우편단속법은 폐지되었다(부칙 제 2조).<sup>22)</sup> 하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신비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1) 외국의 입법례: 김진수, “제외국에 있어서의 통신에 관한 비밀의 보호와 도청에 관한 규정”, 『법제』, 264호, 법제처, 1989.4. 12~34면; 박영도, 『주요국가의 도청방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3-3, 1993.

22) 동 법률의 제정경과와 문제점에 관하여서는, 이윤수,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하여”, 『국회보』 제311권, 1992.9. 20~24면 참조; 정보유통상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의 동 법률에 관한 고찰은,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정보사회와 기업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7회 사회윤리심포지움 발제문, 1995.10.27. 95~99면 참조.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첩보인공위성을 통한 도청 등 도청기술의 발달은 이제 그 도청기술을 현실적으로 생산·운용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만이 수혜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신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통신비밀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칫 국내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가기관이나 국내기업은 불가능한 도청이 외국기관이나 기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23)</sup>

### Ⅲ. 公共部門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保護

####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정부에서는 1989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시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과도기적인 준비조치로서 1991년 5월에는 ‘전산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50호)을 제정·시행하여 오던 차에 1992년 3월에 본법안이 입법예고되고 7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한 차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의 일련의 개혁입법과 맞물려 1993년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1994.1.7)되기에 이르렀다.

법리상·법운용상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처럼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보호는 자칫 특정계층에 의한 악용의 소지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정보공개제도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미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아가서 그 해석·적용의 방

---

23)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정보과학자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과제 이기는 하나, 자동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상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향을 외국의 법제 및 운용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및 그 내용은 이미 입법예고 단계에서 그 명칭까지 엿비슷했던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거의 비슷하다.<sup>24)</sup> 따라서 법의 운용·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험이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보지만 보다 전향적으로는 서구 각국의 입법례도 참조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방향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특징과 문제점

### (1) 법률의 구성체계

동 법률은 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개인정보의 수집·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범위·사전통보·개인정보화일의 공고·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등·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처리정보의 열람·처리정보의 열람제한·처리정보의 정정·불복청구·대리청구, 제4장 보칙-수수료 등·자료제출의 요구 등·의견제시 및 권고·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정부투자기관 등의 지도감독·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제5장 벌칙-벌칙·양벌규정·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부칙 등 법률의 적용범위가 되는 주요한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2) 규제대상인 정보수집·처리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한정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한 이 법의 규율 밖이다. 따라서 사적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제의 정립이 요망된다.

私的 機關을 규율대상에서 除外시키고 가급적 공공기관에 준하여 운용하도

24) 日本 總務廳行政管理局, 『逐條解說 個人情報保護法』, 第一法規, 1988; 총무처,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보시스템안전관리(일본편)』, 1992.12; 堀部政男, “일본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화사회의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89, 19~66면.

록 한 것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고 차후에 사적 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프라이버시법에서는 공적 부문만을 규율하고 사적 부문은 공정신용보고서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덴마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사적 부문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있어서도 사적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도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적 부문의 적용 부정론과, 반면 민간 부문의 전산화의 급진전에 따라 이를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차원에서 부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긍정론이 대립되고 있다.<sup>25)</sup> 생각건대 사적 부문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도 법리상 무리가 따르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 사적 부문에 대하여는 보다 간소한 절차와 완화된 조건하에서 이를 적용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sup>26)</sup>

다만 현실적으로 사적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와 같이 '공역무를 관리하는 사법상 법인'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임무를 부여한 회사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27)</sup>

### (3)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됨

이 법률의 규율대상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된다는

---

25) 송상현, 『컴퓨터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연구보고서, 1988, 38~40면; 박윤훈,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방향",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통신개발연구원, 1989, 61~63면;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23~30면.

26) H. Maisl, "La maîtrise d'une indépendance, commentaire de la loi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La Semaine juridique*, n° 2891, n° 5: 프랑스법상 공적 부문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가 사전 의견 청취후에 결정하지만, 사적 부문은 법률이 정한 요구를 충족한다는 약속을 첨부한 신고만으로 족하다.

27)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금고 등은 물론, 보건공역무에 참여하는 사설병원, 공역무평가권자, 공역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에 의하여 임무가 부과된 사법인까지 포함된다. L.Imbert, "L'informatique", *Jurisclasseur*, 1984, Fascicule n° 274, pp.3~4.

점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한 수기화일에 대하여서는 이 법의 규율 밖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법률의 제정동기가 자동화사회에 부응하는 법제인 점에서 무리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기화일도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프랑스의 법제에서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준용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작업도 필요하리라고 본다.<sup>28)</sup>

#### (4)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기명'개인정보에 한정됨

이 법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였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外國人の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死者'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의 정보중 사자와 유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생존하는 유족의 입장에서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法人은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의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은 법인의 명칭, 상호 기타 표지가 타인에 의하여 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 등 그 성질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sup>29)</sup> 권리보호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정설<sup>30)</sup>에 입각하고 있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그러나 비록 법인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생활보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더라도, 자연인의 사생활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sup>31)</sup>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정보는 순수한

28) 성낙인, "프랑스의 사생활보호법제",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1989, 132면; 입법례: 컴퓨터화일만(스웨덴, 영국, 일본), 비자동화화일 포함(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29)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79, 36·40면.

3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 440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3, 395면;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2, 452면.

31) H. Maisl, op. cit., n° 5; J. Frayssinet et P Kayser, "La loi du 6 janvier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libertés et le décret du 17 juillet 1978", *R.D.P.*, 1979, pp.640~641; A. Houlleaux, "La loi du 6 janvier 1978 sur l'informatique et les libertés", *R.A., Législation et jurisprudence*, 1978, p.33.

개인에 관한 정보와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려하고 있다. 다만 법인·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정보는 제외시키고 있다.<sup>32)</sup>

#### (5) 처리정보에 대해서만 열람·정정청구권의 인정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중 화일의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즉 처리정보에 대해서만 사전통보(제6조), 개인정보처리상황의 공고(제7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제8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범위내에서만 개인에게 열람·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제9조), 비밀유지의무(제9조) 등 외부유출이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적용상 차이가 있는 처리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화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sup>33)</sup>

#### (6)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범위·이용의 제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이 금지된다.<sup>34)</sup> 법 제4조에서 명시한 사상, 신조 외에 종교, 가문, 혈통, 인종 등도 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受忍不可能한 신고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아예 그 수집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입법례를 들 수 있다.<sup>35)</sup>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제5조). 예컨대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32) 총무처, 상계서, 32면.

33) 총무처, 상계서, 38면.

34) 독일의 국제조사판결(1983.12.5.), BVerfGE 65.1(43) : “현대적인 정보자료처리시스템하에서 자기의 인적 자료에 대한 무제한이 수집·저장·사용·교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

35) 관련 입법례 : 프랑스법(제31조), 스웨덴법(제4조), 영국법(제2조제3항), 미국법(제552조의2제5항제1·2호), 일본법(제4조제2항), 독일법(제3·23조).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만 사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군과 무관한 정치인·교수·법조인·종교인·언론인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36)</sup>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제10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화일을 보유<sup>37)</sup>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과 제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업무취급자의 의식부족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이 누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의 후보자 또는 사무장에게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에 수록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선거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대여 금지규정을 두고 있을(제46조)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전산자료 복사본이 임의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2항). 그러나 실제로 변조방지장치된 전산자료가 후보자측에 의해 임의로 수정·변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사실상 이 규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불법·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처리정보에 대한 ‘엑세스권’의 보장

비록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

36)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따라 제기된 이른바 보안사 민간인사찰에 관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 9부 1996.8.20. 선고(한겨레신문 1996.8.21.).

37) 개인정보화일 보유 현황에 관해서는, 총무처 능율국, 『인정보보호제도』, 1995.10. 224면 참조.

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유통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생활 보호의 적극적 개념에 비추어 당연한 요청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상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처리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에 관련된 어떠한 처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개인으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는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이 보다 실질적 기능을 갖게 할 것이다.

#### IV. 私的部門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保護

##### 1. 의 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는 정보화사회의 진전 이전에도 인격권보호의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는 주요한 기본권임에 틀림 없다. 특히 프라이버시보호의 현대적인 논의는 정보화사회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구별이 불투명해 질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종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 등만이 제대로 수집관리할 수 있었으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벌기업 등 사적 기관도 이들 기관 못지 않게 엄청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율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취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법제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기관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처리 등에 따라 이미 많은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다. 행정전산망·동창회명부·신용카드업자 등이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홍보물발송대행업체에게 유출된 사례, 수집이 금지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통신판매업체의 통신판매에 이용되고 있는 사례,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이르는 개인정보전문유통업체 및 브로커의 개인정보판매행위가 드러난 사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 넘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sup>38)</sup>

현재 사적 부문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법제가 없는 상황하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재정경제명령」(제4조, 제12조)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기타 형법(제184조),<sup>39)</sup> 의료보험법(제71조의3, 제75조), 증권거래법(제5조, 제208조), 신용카드업법(제14조, 제25조) 등에서도 비밀 누설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상 신용정보의 보호

### (1) 신용정보에 관한 단일법의 제정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용조사업법·신용카드업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에관한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단편적인 규율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1994년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sup>40)</sup> 이 법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응하는 사적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비록 신용정보에 한정되고 있지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 예상된다.

38) 신원득,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 신용정보보호”, 『신용카드』 제6권, 1995. 3, 43~45면 참조.

39) 한편 개정 형법에서는 컴퓨터관련범죄를 유형별로 삽입하고 있다. ①컴퓨터조작범죄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자기록위작변조죄(공전자위작변조(제227조의2),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 위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 私전자기록의 위작·변개(제232조의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고, ②컴퓨터파괴범죄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컴퓨터업무방해죄(제314조제2항), 재물데이터파괴죄(제366조)가, ③데이터의 스파이(부정입수·누설)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컴퓨터데이터탐지죄(제316조제2항) 및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통권 468호, 1992.2, 42~58면 참조.

40) 김한성, “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연세대 매지논총』 제9권, 1992.2, 477~519면; 전광백, “소비자 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저스티스』, 제28권 1호, 한국법학원, 191~216면. 이들 논문에서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과 독일·미국·일본의 입법례와 이론 및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2) 법률의 주요내용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1호). 신용정보기관으로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등에서 각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1.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항, 2.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불확실한 개인정보, 5.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조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5조), 신용정보업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됨”(제27조)을 명시하고 있고 있다.

## (3) 특징과 문제점

첫째, 이 법률의 제정으로 소비자·신용정보기관·신용제공자와의 3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신용사회구축과 정보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체계의 구축과 이용은 결국 자동화사회의 도래로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정보화사회는 동시에 새로운 신용사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본다.

둘째, 그러나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이 법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업이라는 특수업무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사적부문에서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좁은 영역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법의 제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역기능을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소비자신용정보보고서의 약 50%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중 20%는 소비자가 신용을 얻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자동화사회에 따른 신용정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으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보처리와 더불어 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sup>41)</sup>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개인정보전문유통업체까지 등장하여 말썽이 되고 있고, 통신판매회사직원이 개인신상정보를 팔아 넘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용정보에 관한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42)</sup>

###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정보의 보호

#### (1)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보다는 경제정의에 중점을 둔 입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금융실명제명령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융거래가 전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금융정보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러운 문제이다. 동 명령은 “실지명예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 명령의 주된 목적은 경제정의를 실천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제를 정착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정보가 정보처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비밀보장도 동시

41) 김호중,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신용카드』 제6권, 1995.3, 26~32; 김한성, “신용정보와 프라이버시”, 『신용카드』 제6권, 1995.3, 33~38면.

42) 일본에서의 신용정보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상서는, 신원홍,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소비자 신용정보보호”, 『신용카드』 제6권, 1995.3, 39~59면 참조.

에 규정하고 있음은 당연한 입법적 태도로 본다. 문제는 금융실명제도 확보하고 금융비밀보호도 기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에 관한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본문). 그러나 제4조 단서에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특징과 문제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에서는 그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던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 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법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재정명령 제4조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보다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규정한 것으로, 금융거래 내용 뿐 아니라 금융거래 사실 유무까지 비밀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 국세청 등 사정당국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자가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지조차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자금 세탁행위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동 명령과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비밀보호 우선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43)</sup>

생각건대 동명령의 발동배경 자체가 실명거래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 규정에서 실명제보다는 비밀보장에 오히려 중점을 둔 결과를 초래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이 명령의 목적에서 실명제실시와

---

43) 그간 동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재무당국의 주장에 의해 비밀보장에 중점을 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당국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비밀보장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밀보장이라는 두 개의 축을 궁극적으로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그 출발점을 경제적 권리의 측면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금융거래의 비밀의 보장은 그 목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동일한 법규범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비밀보장은 프라이버시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V. 프라이버시保護를 위한 指導監督 · 權利救濟 總括機構의 必要性

### 1. 의 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순한 심의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이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도감독과 일차적인 권리구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정립시키는 방안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sup>44)</sup> 영국의 데이터보호등록관,<sup>45)</sup> 독일의 연방데이터담당관,<sup>46)</sup> 스웨덴의 데이터감독위원회<sup>47)</sup> 등이 참조될 수 있다.

44) 위원회의 지난 10년간의 운용실체에 관해서는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ix ans d’informatique et libertés*, Economica, 1988, pp.64~75.

45) 1987년 5월 15일에는 1984년데이터보호법보다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기화일포함) 액세스권을 확대한 ‘개인기록엑세스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이 제정되었다: S. Chalton - S. Gaskill, *Data Protection Law*, Sweet and Maxwell, 1988; 堀部政男, “英國의 個人情報保護法”, 『*주리스트*』, 1987.3.1, 879호, 35~36면.

46) A. Richter, *Datenschutz*, 1982, S.142; 김선옥,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상의 데이터보호담당관제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0.2, 55~58면.

47) 松本淳一郎, “스웨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최근의 동향”, 『*주리스트*』, 1982. 3.1, 760호, 24~28면.

## 2. 비교법적 검토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立法例가 다소간 상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크게 内部規律과 外部規制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정보처리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기구로서는 ①정보처리자 내부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식(미국, 일본), ②감독기관에 의한 외부통제방식(프랑스, 스웨덴, 영국), ③양자를 절충하여 모두 채택하는 방식(독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규제를 통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제·감독하는 경우에도 어떤 성격의 기구가 통제·감독임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①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스웨덴, 프랑스, 독일), ②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프랑스, 캐나다), ③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이용을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는 감독기구의 성격과 규제의 내용·정도 등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상 감독기구의 기능 및 권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보화일(정보시스템)설치에 대한 신고·등록의 접수 및 심사와 허가 등의 통제기능(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②정보시스템의 설치, 수집·이용·보관 및 적정관리 등 법준수상태를 조사·지도·감독하고 그 위반에 대해 시정을 권고·명령하는 기능, ③시정명령·권고의 불이행, 기타 범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권한(프랑스), ④정보당사자의 민원·고충과 정보처리자의 이의신청 등을 접수하고 심사·처리하는 기능(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⑤기타 정보책임부의 작성·공시,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건의·조언, 의회 등에서의 정기·부정기적인 보고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기능 등이 있다.

## 3.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총괄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화일의 감독과 권리구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정보시스템관리의 객관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화일에 등재·유통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청의 공권력적인 작용의 경우와 그 성격을 달리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화한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지 사생활의 보호는 그것이 공적 부문에 한정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대기업의 정보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한 인식의 전제하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사적 부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私的 部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실정이고 보면 이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감독기구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공적 부문만 관할하는 미국<sup>48)</sup>과는 달리 사적 부문까지 관할하는 나라들인 프랑스·영국·독일·스웨덴의 예에서 모두 특별감독기구를 설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앞으로 사적 부문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를 어차피 사적 부문에 관한 공적인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 바 그 관리를 행정청에서 담당할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공적 개입은 자칫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sup>49)</sup>

## VI. 프라이버시保護 · 알 權利 · 言論의 自由의 相互關聯性

### 1. 의 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흔히 정보화사회에서 '유리알 인간화'의 문제를 제기 하면서 심지어 '권력에 의한 인간사냥'이라고까지 문제제기가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알 권리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립은 행정의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실명제'라고 불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48)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상 감독기구는 연방행정관리에산청이다. 다만 법상 프라이버시연구위원회(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을 따로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연구와 입법건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양원의장이 2명씩 지명하는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49)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한국에서의 입법론적 대안에 관해서는,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4, 27~43면 참조.

서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개 필요성은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것은 정보공개 원리에는 부합할지라도 자칫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sup>50)</sup>

한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최대한 보장과 최소한 제한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일반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이다. 그러나 종래 국민은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라는 새로운 법제의 정립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sup>51)</sup>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언론보도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이외의 자에게는 누설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언론이 갖는 특수한 성격과 기능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행태가 출현할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법상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sup>52)</sup>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제10조제1항).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2항)<sup>53)</sup>고하여 이를

---

50) Fred H. Cate, D. Annette Fields, James K. McBain,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 The 'Central Purpos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dministrative Law Review*, 46.1, 1994 Winter, pp.69~71.

51) Cf. R. Wacks, "Privacy and Press Freedom", *Cambridge Law Journal*, 55.1, pp.164 et suiv.; William Wilson, "Privacy, confidence and press freedom : a study in judicial activism", *Modern Law Review*, 53.1, 1990.1, pp.43~56.

52) 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74조(관계기관의 협조),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등이 있다.

비교적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상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에서도 비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안 제7조제1항제8호 다)는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이 갖는 공익 내지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비록 그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관리·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기관 스스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방법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도할 경우에 이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논하여야 할 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논하여야 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이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체계하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언론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는 것은 자칫 언론의 공공적 차원에서의 사생활보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기초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의료보험 관련자료를 담당자가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한 사례, 주민등록기록을 열람한 후 독신녀 주거지를 강도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외제 고급승용차의 차주를 확인하여 강도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sup>54)</sup>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개인정보의 유용에 대하여는 범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이 완전히 차단되리라고 볼 수는

53)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5.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8.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4)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7면.



없다. 심지어는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용역회사의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행하는 언론의 취재 보도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종래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를 위한 이른바 공익이론을 원용할 여지를 남겨 준다. 즉 공익의 입장에서 보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인물에 대하여서는 그 사회적 지위에 부응하여 사생활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공적존재의 이론도 참조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sup>55)</sup>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보도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한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더 신중해야만 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은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약자인 개인의 이익보호에 우선하여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 3.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언론의 보도기능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알 권리의 확충강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실질화시켜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종래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알 권리를 설명하는 태도는 타당할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본격적인 등장이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개선 즉 행정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래 언론을 통한 국민의 공공정보에의 간접적인 접근양태가 이제 언론매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직접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흐름에 새로운 변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

55) 박용상,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1994. 10) 발표논문 참조.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sup>56)</sup>

그러나 알 권리의 제도화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자칫 언론의 취재보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엄격한 운용은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보공개법의 특성상 별척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언론의 기획취재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sup>57)</sup>

#### 4.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의 자유의 조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통한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의 확보는 정보화사회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 다른 한편 종래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지배하고 있던 국민의 알 권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히려 그 독점적 지위 및 위상이 새로운 변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지배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알 권리에 입각한 정보공개청구나 언론의 자유의 규범조화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sup>58)</sup>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56) 헌재 결정 1991.5.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판례집 제 3권, 1991, 234면 이하.

57) 최근 월간조선이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을 통하여 기획취재보도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에 관한 기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사생활침해의 우려도 담고 있을 수 있다.

58) 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

이론상으로도 이익형량의 원칙 내지 규범조화적인 해석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본권충돌의 경우 이익형량 및 규범조화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판결과 같이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sup>59)</sup> 즉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sup>60)</sup>

## VII. 結 語

1.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의 진보는 개인의 사생활은 더욱 침해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더욱 심각한 사적 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법제 및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법제의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특히 아직까지 이에 관한 법의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하에 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유통이 자행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보

---

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판례집』 제3권, 1991, 529면 :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59) 헌재 1991.7.22,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판례집』 제3권, 1991, 433~434면,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60) 대판 1988.10.11, 85다카29. 한편 언론사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인격권보호차원에서 공개거부결정을 한 법원이 판례(서울고법 1995.8.20, 94구39262)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성낙인,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고시계』, 통권 465호, 1995.11. 참조.

호가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도 주권자인 국민과 갈등없는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면, 프라이버시보호와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가 정립되면 나아가서 교육에 관한 프라이버시, 가정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등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연구가 뒤따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법제연구 / 제11호

『부 록』 한국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분석

대상부문	공적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사적부 문은 별도법류제정)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대상데이터 처리형태	자동처리만을 대상	자동처리만을 대상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자동처리 이외 의 것은 일부 규정 만 적용)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자동처리 이외 의 것은 일부 규정 만 적용)	자동처리만을 대상	자동처리만을 대상
대상데이터 의 종류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시스템의 설치	사전통보제	허가제	신고제	신고제	공적부문은 허가제 · 민간부문은 신고제	등록제	신고제
규제조치	·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제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제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제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제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 제공규제 · 유지관리규제
시스템의 공시	총무청장관이 연 1회 이상 관보에 공고· 게재	공시는 정보공개법 에 의해 규정	행정기관이 보유중 인 시스템에 대해 연 1회이상 관보에 공시	공적부문은 공시의 무부여,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요	국가정보자유위원 회가 공시	등록관이 공시일반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원에 제출	[민간부문] 총무청장관이 매년 1회 관보로 공시
정보의 개시 · 정정 등 개인의 권리	자기정보의 열람· 정정 청구권	자기정보의 열람 청구권	· 자기정보의 열람 · 정정청구권 · 열람·정정청구권 의 적용제외 · 불복신청	· 자기정보의 열람 · 정정청구권 · 시정요구 행정 소송	자기정보의 열람· 정정청구권	· 자기정보의 열람 · 정정청구권	· 자기정보의 열람 · 정정청구권